

[전문가 視覺] 기업의 '환경·근로자 인권' 책임, 이전 외면 못 해

✎ 김대식 한국조달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승인 2022.07.25 07:00



최근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코로나 방역을 위한 중국의 지역봉쇄 등이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 국내 주요 산업에 중대한 생산차질을 유발하는 것을 보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현실과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된다.

더불어 이러한 공급망과 관련해 EU집행위원회가 '지속가능성 실사법'이라 불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입법안을 올해 2월 마련하고 현재 EU의회의 법안통과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기업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법안에 따르면,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회사, 자기와 '가치사슬'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경영활동 과정에서 초래할 수 있는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실사를 수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규율 대상 기업은 인권과 환경 실사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인권 및 환경에 대한 실질적·잠재적 부정적 영향이 확인되면, 확인된 부정적 영향을 방지·완화·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 실행계획에는 주계약 기업이 이행가치사슬에 속한 협력사와 체결하는 계약조항에 협력사가 회사의 행동강령과 실행계획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하고, 협력사 또한 그들의 협력사와의 관계에서 유사한 내용의 계약조항을 포함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기업은 실사 규정을 위반하고 부정적 영향을 적시에 파악하지 못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해당 기업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지만 당해 기업이 이를 대비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동남아시아 개도국에 있는 현지인 공장에 생산을 위탁해 의복을 제작, EU 시장에 수출하는 국내 A기업을 가정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르면 하청을 준 현지 공장에서의 노동 조건, 작업환경, 탄소배출상황 등을 꼼꼼하게 챙기고 하청계약에 관련 의무사항을 반영 및

관리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방기할 경우 손해배상을 포함해 EU 역내 수출에 있어 제재가 따른다.

일단 EU의 지속가능성 실사 법안 규율 대상범위에서 중소기업이 제외됐고, EU 역내 기업은 글로벌 매출 기준으로, 역외 기업의 경우 EU 내 매출을 기준으로 일정 정도 법적용을 제한한 결과, 주로 대기업이 규율대상이 됐으나 법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한 ①섬유, 가죽 제조 및 도매업, 의류업 ②농업·임업·어업, 농산물 및 목재 도매·축산, 음식료업 ③광물(원유, 천연가스, 석탄, 금속 등) 추출 및 제련·가공업, 광물 자원과 기초 및 중간 광물제품의 도매(금속, 연료, 건축소재, 화학, 기타 중간재) 등은 중견기업의 경우에도 규율 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구매공급망 관리와 연관된 입법과 유사한 사례가 유럽에서는 국내법 제도로 다양하게 존재해 왔다. 지금은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영국의 런던교통공사의 경우 직원의 근무복을 구매하면서 근무복을 제작하는 중국, 방글라데시 등 생산지에서 근로자들의 인권 및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기준·요구사항을 공급계약 내용에 설정했다.

지금까지는 유럽이 2023년부터 시행되는 EU 탄소국경세 등 기업활동의 사회적 책임 테마를 주도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대상 선진국가들에서도 유사 제도의 도입·집행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의 수출을 주도하는 철강, 화학 등 국내 주요 제조업계와 해외 건설 참여업계 등의 광범위한 환경·인권 관리역량 제고가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대식 한국조달연구원 선임연구위원